

중소기업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안건

의안번호	제 2013 - 2 호
의 결 연월일	2013. 1. 31. (제 1 회)

의 결  
사 항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
신설 · 강화규제 심사안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송종호
제출연월일	2013. 1. 31.

# 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 .....	1
□ 요약 .....	1
II. 규제 심사안 .....	1
1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.....	1

## 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### 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 규제내용
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 등을 위한 운영 실적 판단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창업보육센터의 임대 실적이 보육실 총 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임대할 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영평가 결과 사업 실적 및 성과가 현저히 부진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때를 추가</li> </ul> <p>⇒ (사유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의 판단기준을 임대 실적에서 운영 실적으로 개정함('12.8)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</p>

## II. 규제심사안

### Ⅰ 규제 강화 내용

#### □ 도입배경

- 매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, 운영 실적이 다년간 부진한 창업보육센터가 존재
  - \* 3년 연속 최하등급 평가 받은 창업보육센터 수(개) :  
(07~'09) 20 → ('08~'10) 19 → ('09~'11) 9 → ('10~'12) 6 (평균 13.5)
-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지원중단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창업보육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

-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지원중단을 위한 평가기준인 '임대 실적'만으로는 동 센터의 정비 및 정상화 유도에 한계
- 이에, 운영 실적이 부진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지원 중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을 개정(12.8.13)
  - 판단기준을 '임대 실적' ⇒ '운영 실적'으로 변경

<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 제4항 >

-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- <생략>
1. ~ 2. <생략>
  3.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 및 장소의 운영 실적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
  4. <생략>

□ 추진방안

- 매년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지정취소토록 시행 규칙에 '운영 실적'의 기준을 명시

□ 주요내용

운영 실적 부진에 대한 판단 기준은,  
 “매년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때”로 규정

-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고조치는 운영평가 점수가 중기청장이 정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

- 현행 운영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은 지역별 상대평가를 통해 결정되어 상대적인 비교에는 유용하나,
  - \* 등급별 비율(%): S등급(10), A등급(40), B등급(30), C등급(10), D등급(10)
- 동일한 점수에도 연도·지역에 따라 평가등급은 달라질 수 있어 행정 처분을 위한 지표로는 부적합
- 따라서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절대적인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 하되, 그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고시에 명시
  - \*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(우리청 고시)에 운영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'경고'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
  - \*\* 다만, 현재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평가지표 개편 중으로, 향후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점수를 설정 (예: 30점 또는 40점)
- 부실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경고 처분의 누적 횟수는 “최근 3년간 2회 이상”으로 규정하되,
  - “지원중단” 또는 “지정취소” 처분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중기청 고시에 반영할 계획
  - \* 최근 3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우선 지원중단을 결정하고, 추가로 경고를 받아 제차 “3년간 2회 이상 경고” 요건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조치

< 유사입법 예 : 녹색환경지원센터 >

(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0조의2)

- 사업실적 등에 대해 연1회 정기평가 실시
- 사업실적이 부실한 센터에 대해 경고조치
- 지정취소 요건 : 3년 이내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

**< 신 · 구조문대비 표 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<u>취소</u>)</p> <p>법 제43조제4항제3호에서 “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”란 해당 <u>창업보육센터의 임대실적이 증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임대한 때를 말한다.</u></p>	<p>제17조(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<u>취소 등</u>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창업보육센터가 증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미만으로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이거나,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 사업 실적 및 성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어 경고를 받은 경우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때</u>-----.</p>

## ② 규제영향분석서

### 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미등록		구분							
	등록단위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	강화	○	내용사		존속기한장	
		○			경계적규제	○	사회적규제		행정적규제		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</li> <li>• 창업벤처국장 공석, 창업진흥과장 오기웅 (042-481-4407)</li> </ul>										
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</li> </ul>										
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의견수렴 방식				의견내용				
	피규제자	창업보육센터사업자	입법예고 (‘12.12.17~’13.1.25)				없음				
	이해관계자	창업보육센터사업자	입법예고 (‘12.12.17~’13.1.25)				없음				
	관련 부처	지식경제부 등	관계부처 협의 (‘12.12.17~12.26)				없음				
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</li> </ul>										
현행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행 규제 : 임대실적을 기준으로 평가</li> <li>• 강화 규제 내용 : 임대실적 외에 운영 실적 기준을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매년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때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
규제체계도	지원중단 및 지정취소										
	중소기업청 → 창업보육센터사업자										

## 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### (1) 규제의 필요성

#### □ 문제 정의

- 창업보육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정취소 처분 등을 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개선
- 현행 '임대 실적' 기준만으로는 창업보육센터의 정비 및 정상화 유도에 한계가 있어 '운영 실적' 기준을 추가

#### □ 규제의 강화 필요성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을 개정하여 운영 실적이 부진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판단기준을 '임대 실적' ⇒ '운영 실적'으로 변경
- 개정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(시행규칙)을 개정하여 '운영 실적'의 기준을 명시할 필요

### 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#### □ 비용·편익 분석

- 이미 매년 정기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평가를 실시 중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-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정취소 등을 통해 창업보육사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



### 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#### □ 규제의 적정성

- 규제 대상을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·연구기관 등에 한정하였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됨

#### □ 이해관계자 협의

- 개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('12.12.17 ~ '13.1.25) 결과 이견이 없었음

#### □ 규제의 실효성

- 운영이 부실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등을 통해 창업초기 기업이 양질의 인프라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